

의정활동보고서

제184회 임시회(2003. 12. 22 ~ 12. 26)

경 상 특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효채 부지사님과 이철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 이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8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례회기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경기침체와 거듭된 수해 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시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무사히
극복해낸 한해 였습니다.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우리 도가 전국 체전에서 5위의 성적을 거두어
경북인의 명예를 한층 드높였습니다.

지역의 숙원이었던 “고속철도 역사 유치”를 우리 도의회가 적극
대처하여 해결해 낸 점은 금년 의정활동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우선,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이 조만간에 국회 통과가 예상되므로
지방 차원에서 활발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활성화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17대 총선이 있습니다.

국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다 성숙된 선거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을 하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정례회가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도의 도정을 설계하는 회기였다면,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리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금년을 마무리 해야 할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 해야 할 안건처리에 차질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 심사에 이어 추경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한정된 회기중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2. 22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개 황	
II.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기타사항

VI. 5분자유발언

부 록

조 례 안

예 산 안

동 의 안

기 타 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84회 임시회는 2003년 12월 22일 개최하여 12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9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2월 22일(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4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003년도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회기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2003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12월 26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김석호 의원)을 청취한 후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7건), 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2003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라. 집회공고일 : 2003. 12. 6

마. 집 회 일 : 2003. 12. 22(월)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3. 12. 22 ~ 12. 26(5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41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9	1	1	1	1	2	1	1	1
누계	193	20	21	26	30	21	23	21	31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12.22(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5회임시회회기협의의견 ○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 "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12.22(월)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제 1 차 원안가결 "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12.22(월)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자연환경연수원 포함)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 1 차 원안가결 " 수정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12.23(화)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004년도경상북도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12.22(월)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농업기술원 소관 	제 1 차 수정가결
12.23(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농수산국 소관 	제 2 차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3.12.23(화)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11 (164)	11 (163)	10 (147)	1 (15)	(1)	(1)	유보1	
조 례 안	소계	7 (68)	7 (68)	7 (64)	(3)	(1)		
	의 회 제 안	3 (6)	3 (6)	3 (4)	(1)	(1)		
	도지사 제 출	3 (50)	3 (50)	3 (48)	(2)			
	교육감 제 출	1 (12)	1 (12)	1 (12)				
예산·결산	2 (17)	2 (17)	1 (8)	1 (9)				
동의·승인	1 (46)	1 (46)	1 (45)	(1)				
건의안	(7)	(7)	(6)	(1)				
결의안	(7)	(7)	(7)					
기 타 안	1 (19)	1 (18)	1 (17)	(1)		(1)	유보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2 (166)	12 (163)	8 (68)	2 (17)	1 (46)	(7)	(7)	1 (18)			(3)
의회운영	3 (5)	3 (5)	3 (4)				(1)				
기 획	1 (15)	1 (14)	1 (7)		1 (5)	(1)		(1)			(1)
행정사회	2 (45)	2 (44)	2 (28)		(15)	(1)					(1)
교육환경	1 (21)	1 (21)	1 (15)		(5)			(1)			
농 수 산	(10)	(10)	(3)		(6)	(1)					
산업관광	1 (21)	1 (21)	1 (9)		(11)		(1)				
건설소방	(9)	(9)	(2)		(4)	(2)		(1)			
특 별	2 (17)	2 (17)		2 (17)							
본회의	1 (23)	1 (22)				(2)	(5)	1 (15)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63)	(5)	(8)	(9)	(11)	(5)	(3)	(6)	(5)	(1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7)	(4)	(2)	(1)						
교육환경	(11)			(1)		(5)		(5)		
농 수 산	(6)			(1)	(1)				(4)	
산업관광	(14)		(6)	(1)			(3)			(4)
건설소방	(20)	(1)		(5)	(10)			(1)	(1)	(2)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61)	(61)				(2)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7)	(7)				
교육환경	(11)	(11)				
농 수 산	(6)	(6)				
산업관광	(13)	(13)				(1)
건설소방	(19)	(19)				(1)
특별위원회	(3)	(3)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교육감 (2003. 12. 10)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3. 12. 12)
경상북도지사 (2003. 12. 10)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환경 (2003. 12. 11)
경상북도지사 (2003. 12. 11)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 (2003. 12. 11)
경상북도지사 (2003. 12. 11)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기 획 (2003. 12. 12)
경상북도지사 (2003. 12. 11)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관광 (2003. 12. 12)
경상북도지사 (2003. 12. 18)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 12. 18)
경상북도지사 (2003. 12. 18)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 12. 18)

2. 기타 사항

○ 일본 나라현 의회 방문단(11명) 접견

- 일 시 : 2003. 12. 19(금) 16: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최원병 의장, 김선중 부의장, 손만덕 국제친선연맹 회장,
이종철 국제친선연맹 부회장, 장 욱 국제친선연맹 간사

VI. 5분자유발언

□ 제2차 본회의

김석호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 출신 김석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전국 공단으로는 최초로 연간 수출 200억 달러를 지난 12월19일에 돌파했으며, 올 연말까지 250억 달러 수출이 예상되어 명실상부한 수출산업기지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수출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95년 이후 8년 동안 400%의 놀라운 신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수출 신장세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LG전자의 PDP TV, LG필립스 LCD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 등 최첨단 전자제품으로 앞으로도 수출전망이 밝은데다 현재 조성 중인 제4공단의 기업들의 입주완료가 완료되면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시가 세계 속의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이 확립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 비약적인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장과는 거꾸로 곧 교통인프라는 오히려 과거보다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경북의 교통정책은 개인 교통수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미시민들은 구미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 중 첫 번째가 교통문제일 정도로 구미의 교통환경은 열악하며 국제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공항 접근 및 편의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구미역에 정차하는 새마을호 열차는 10년 전보다 정차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국제관문인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인과 외국 바이어의 불편이 증대되고 삼성

전자에서는 불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수원 간에 매일 헬기를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화된 지구촌은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으로 교통접근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기업들은 구미로의 교통접근성이 어려워 회사를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수도권이나 경기도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 기업 총량제가 완화되면 중·대기업에서도 공항 인근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칫 지역산업의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같은 교통 불편에 그나마 지난 3년간 한정적으로 운행되던 구미~대구 공항간 공항버스도 운송업자의 막대한 결손으로 인해 지난 12월11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항버스는 구미와 대구 국제공항간을 매일 12회 왕복 운항하면서 외국 바이어를 비롯한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국가산업단지의 생산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지역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항버스의 운행과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미공단을 찾는 많은 외국인을 비롯한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제품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미~대구공항간 공항버스 운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교통인프라도 더욱 확충하여 지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산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의원이 제기한 공항버스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7건
- 예 산 안 : 2건
- 동 의 안 : 1건
- 기 타 안 : 2건

□ 조 례 안 : 7건

-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2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재교부 및 폐기)</p> <p>① (생략)</p> <p>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 (재교부 및 폐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p>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2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경상북도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경상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1~5호(생략)</p> <p>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경상북도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경상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1~5호(현행과 같음)</p> <p>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경상북도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경상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p>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2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700,000원”을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불화)

구 분	숙 박 비 (1야당)
의 장·부 의 장	가 등 급 205
	나 등 급 149
	다 등 급 118
	라 등 급 100
의 원	가 등 급 166
	나 등 급 120
	다 등 급 92
	라 등 급 7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2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중 “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문화체육관광국)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6.(생략)</p> <p>17. <u>경북첨단문화산업의 추진·기획</u></p> <p>18. (생략)</p>	<p>제9조(문화체육관광국).....</p> <p>.....</p> <p>1. ~ 16. (현행과 같음)</p> <p>17. <u>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u></p> <p>18.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2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3,639” 를 “3,645” 로 하고, 제1호 중 “1,693” 을 “1,699” 로 한다.

조례 제2685호(2001. 2.2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 중 14명(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1명(지방이양업무추진 한시정원)은 상시정원으로 한다.

조례 제2763호(2003. 3. 3)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집행기관의 정원 중 11명(농업정보센터 10명, 실업대책추진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 중 17명(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639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693명</u></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u>3,645</u>.....</p> <p>1. : <u>1,699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1. 2. 22)</p> <p>제1조(생략)</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9명 중 10명(농업정보센터 운영)은 2002. 12. 31까지, 15명(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운영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은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3. 3. 3)</p> <p>제1조(생략)</p> <p>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개정으로 연장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0명(농업정보센터운영)은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1. 2. 22)</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집행기관의 정원 중 14명(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1명(지방이양 업무추진 한시정원)은 상시정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3. 3. 3)</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집행기관의 정원 중 11명(농업정보센터 10명, 실업대책추진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2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지휘자”를 “지휘자와 악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위촉기간) ①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 ③(생략)</p>	<p>제11조(위촉기간) ①지휘자와 악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 ③(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12. 26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1]의 『명칭 및 위치』란중 “상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평초등학교신평분교장병설유치원, 예천남부초등학교신평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도산유치원”란 다음에 “상모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상모유치원	구미시 상모동 1

“영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영천포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영천포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천시 야사동 34-1

[별표2]의 『명칭 및 위치』란중 “원호초등학교”란 다음에 “문장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문장초등학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34

“영화초등학교”란 다음에 “영천포은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영천포은초등학교	영천시 야사동 34-1

[별표3]의 『명칭 및 위치』란중 “봉곡중학교”란 다음에 “선주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선주중학교	구미시 봉곡동 50

[별표4]의 『명칭 및 위치』란중 “포항고등학교”란 다음에 “두호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두호고등학교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3B1L
장성고등학교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0B1L

“인동고등학교”란 다음에 “상모고등학교, 사곡고등학교, 선주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상모고등학교	구미시 상모동 447-1
사곡고등학교	구미시 사곡동 461-2
선주고등학교	구미시 도량동 306

『명칭』란중 “의흥경영정보고등학교”를 “군위정보고등학교”로, “진보공업고등학교”를 “진보종합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 산 안 : 2건

-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세입 예산 - 3,381,199,194천 원

○ 일반회계(3,144,000,000천 원) : 수정 없음

※ 수정내역 - 붙임과 같음

○ 특별회계(237,199,194천 원) : 수정 없음

□ 세출 예산 - 3,381,199,194천 원

○ 일반회계(3,144,000,000천 원) : 수정 없음

※ 수정내역 - 붙임과 같음

○ 특별회계(237,199,194천 원) : 수정 없음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증감조서

[세 입 분 야]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감 액	비고
	사회복지여성국	소 계	43,085	
68	"	611-01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국 43,085	국고변경 내 시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고
	농수산국	소 계	500,000	
		311-01 조류독감 방역대책	500,000	특 별 교 부 세
	사회복지여성국	소 계	43,085	
68	"	611-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국 43,085	국고변경 내 시

[세 출 분 야]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감 액	비고
	사회복지여성국	소 계	69,170	
75	"	308-01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계 61,550 국 43,085 도 18,465	국고변경 내 시
79	"	308-01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7,620	과목착오 계 상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고
	사회복지여성국	소 계	69,170	
75	"	308-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계 61,550 국 43,085 도 18,465	국고변경 내 시
79	"	403-01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7,620	과목착오 정 정
	농수산국	소 계	500,000	
	"	206-01 가축방역소독약품	400,000	
	"	206-01 방역복	100,000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세입 예산

- 예 산 액 : 1,958,235,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세출 예산

- 예 산 액 : 1,958,235,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동 의 안 : 1건

-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 12.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 안 사 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2004년도 발행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함

2. 주 요 내 용

- 발행주체 : 전국 16개시·도(광역자치단체) 연합발행
- 발행형식 : 즉석식, 인터넷, 로또
- 발행금액 : 700억원
- 예상판매 수익금 : 111억원
- 발행기간 : 2004. 1 ~ 2004. 12
- 판매지역 : 전국

3. 복권발행계획

① 발행 및 판매목표액

(단위 : 백만원,%)

발행형식	발행액(A)	판 매 액(B)		예상수익액(C)	
			A/B		B/C
합 계	70,000	47,250	67.8	11,103	23.5
즉 석 식	35,000	26,250	75.0	6,168	23.5
인 터 넷	35,000	21,000	60.0	4,935	23.5
로 또	10개 복권발행기관연합협의회 결정에 의함				

② 복권발행 조건

- 정부의 복권정책에 따라 발행조건의 탄력적 적용
- 액면금액 : 500원, 1,000원, 2,000원
- 1등 당첨금 : 5천만원(액면금액 500원 1매기준)
1억원(액면금액 1,000원 1매기준)
5억원(인터넷 추첨식 복권)
- 당첨금 지급한도 : 발행액의 51.5%

③ 발행계획

구 분	발행회차	발행액(억원)	액면금액(원)	비 고
즉석식	5회이내	350	500~2,000	
인터넷	3회이내	350	500~2,000	
로 또	10개 복권발행기관연합협의회 결정에 의함			

※ 발행횟수, 발행액, 액면금액은 시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발행 및 판매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복권사업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행, 시중소화

- 수익금 배분 : 협의회 합의에 의해 배분방법 결정

□ 기 타 안 : 2건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견
-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괄

1. 감사기간 : 2003. 11. 21 ~ 11. 29(9일간)
2. 대상기관 : 52개기관(경상북도 31, 경상북도교육청21) ※ 현지확인 20개소
3. 감사결과

감사위원회	부서별	계	시정처리 요구	건의·촉구사항
합 계		247	124	123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4	2	2
기획	소 계	49	16	33
	공보관실	6	2	4
	감사관실	4	2	2
	기획관리실	10	2	8
	공무원교육원	9	3	6
	지방의료원(3)	16	7	9
	경북개발공사	4		4
행정사회	소 계	23	6	17
	자치행정국	9	2	7
	사회복지여성국	5	2	3
	경도대학	5	2	3
	자연환경연수원	4		4
교육환경	소 계	35	18	17
	보건환경산림국	9	4	5
	보건환경연구원	2	1	1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3	2	1
	팔공산도립공원	2	1	1
	도교육청(10)	13	7	6
	시·군교육청(11)	6	3	3
농수산	소 계	30	14	16
	농수산국	9	4	5
	농업기술원	14	7	7
	축산기술연구소	3	2	1
	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4	1	3
산업관광	소 계	67	67	
	경제통상실	12	12	
	문화체육관광국	8	8	
	유관기관(6)	47	47	
건설소방	소 계	39	1	38
	건설도시국	16		16
	종합건설사업소	6		6
	소방본부 및 소방서	17	1	16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총 평〉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27일 제175회 본회의에서 구성한후 3차례의 간담회와 타 시·도 비교시찰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징계·자격에 대한 소양을 높일 기회를 가졌음.
- 본 위원회의 구성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품위를 지키고 회의질서를 유지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풍토가 이룩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위원회 현황

- 활동기간 : 2002. 12. 27 ~ 2003. 12. 26(1년간)
- 위원회 구성 : 11명(의장 추천 5, 상임위 추천 6)
 - 위 원 장 : 양재경(농수산위), 간 사 : 황상조(건설소방위)
 - 구성일자 : 2002. 12. 27(제175회 본회의)
- 주요업무
 -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사항 심사

활동내용

□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7. 9. 11:00 ~ 11:40
- 장 소 : 징계자격특위 위원실
- 참 석 : 10명(위원,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 타 시·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등 질문(회의서류로 대체)
 - 타 시·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비교시찰 시기 등 결정
 - 징계자격특위 운영에 따른 운영비 필요성 설명
 - 당초 명칭을 징계자격특위로 정한 이유 설명 등

□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8. 21. 16:30 ~ 17:30
- 장 소 : 징계자격특위 위원실
- 참 석 : 11명(위원,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 징계자격특위운영및구성에관한규칙 제정의 필요성 설명
→ 타 시·도 비교시찰을 통한 현황 파악후 검토
 - 타 시·도 비교시찰의 구체적인 내용 논의

→ 2003. 8. 25 ~ 8. 27(2박3일),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지 등으로 결정

□ 타 시 · 도 비교시찰

- 일 시 : 2003. 8. 25 ~ 8. 27(2박3일)
- 시찰지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지, 신안군 일대
- 참 석 : 9명(위원,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 광주광역시의회 : 의회현황 청취 및 비교견학
 - 전라북도의회 : 의회현황 청취 및 윤리특위위원회과의 간담회
 - 새만금간척사업지 : 현황청취 및 전시관 견학, 주요사업장 방문

□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11. 3. 16:30 ~ 17:30
- 장 소 : 징계자격특위 위원실
- 참 석 : 9명(위원,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 징계자격특별위원회운영규칙 제정건(의장단과 협의후 결정)
 - 향후 효율적인 징계자격특위 운영방안 토의 등

의정활동보고서(제184회 임시회)

2004. 1 인쇄 / 2004.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